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
------	-----

제출년월일:2002. 2. 20.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및 관련법규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4조)

다. 문화계 부속토지의 경감방법 명확화(안 제9조)

라.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관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12조)

마. 외국인 투자지원유치를 위한 감면기간 자율 결정(안 제23조)

바.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기간 자율 결정(안 제25조)

##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도 세정 13400 - 11715호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1 - 414호(결과, 의견내용 없음)

## 4. 본문 : 불임참조.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고성군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제목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3조중 “7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5년간”을 “3년간”으로,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u>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음성한센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u>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u>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u>그 농원안</u>----- ----- ----- -----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의 (50%)</u>를 경감한다.</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②----- -----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p>

현행	개정안
<p>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단서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p>	<p>제12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 ----- --<u>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u>-----</p> <p>(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p>

